

전주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049(본소), 2022나1056(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 용역비]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나1049(본소), 2022나1056(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3165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시정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오슬기, 최정필

변론 종결2023. 5. 18.

판결 선고2023. 6. 29.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31656(본소), 2021가단 29216(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3.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100원 및 그 중 2,53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7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소, 화훼 등의 재배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와 각종 개발사업 허가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20.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외 7필지(E 토지, F 토지, G 토지, D 토지, H 토지, I, J, K,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1) 합계 20,205㎡ 부지에 야영장(캠핑장) 및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 등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인허가 및 준공시까지
지불조건	①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도서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불지체시 연체금리를 적용한다.③ 현장 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원고)과 을(피고)이 협의 후 정한다.④ 민원발생 등 갑(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도 용역비는 전액을(피고)에게 완불하여야 한다.⑤ 을(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는 을(피고)은 서로 협의하여 용역비를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지급시기	지급액
토목설계	계약금
중도금	900만 원
잔금	1,200만 원
소계	3,000만 원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평가서	계약금
중도금	1,400만 원
소계	2,800만 원
합계	5,800만 원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에게 토목설계 계약금 990만 원, 사전재해 및

사전환경성평가서 계약금 1,540만 원 합계 2,5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정원 조성, 야영장 시설 조성, 야영장 시설 진출입 도로 개설을 위한 각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비산먼지 처리 계획서, 예산내역서, 지적 및 구적 평면도, 실측 평면도, 공사계획 평면도, 피해방지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허가에 필요한 각종 부속도서를 준비하고,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야영장 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서를 마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고창군수에게 2020. 9. 25. 이 사건 토지들 중 H 토지에 관하여 정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이 사건 토지들 중 D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D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 허가 신청, I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 신청 및 그 부속도서를 업로드하였고, 야영장 시설 조성에 따른 진출입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J, K에 관하여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및 그 부속도서를 업로드하였다. 원고가 지정한 건축사 사무소(주식회사 L의 M 건축사)는 2020. 10. 15. 위와 같이 세움터에 업로드된 각 신청을 접수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토지들 중 전북 고창군 D 토지 및 H 토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8호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고, 별표 19 제2호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야영장 시설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고창군 계획 조례(2021. 7. 15. 고창군 조례 제2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창군 계획 조례'라 한다) 제30조 제18호 별표 18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야영장 시설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2020. 11. 3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고창군수는 2020. 12. 18. 위 2020. 9. 25.자 정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 21, 22호증, 제1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법령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에 야영장 시설 조성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한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2,5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법률로 금지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1294, 2010다41300(병합), 2010다41317(병합), 2010다41324(병합), 2010다41331(병합)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본다.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일부가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 국토계획법령 및 구 고창군 계획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20. 3. 30.경 고창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안에 야영장 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 18,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8호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9호로 개정된 별표 19 제2호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여 2019. 6. 20.부터 시행된 사실, 그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북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각 도시·군 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한 사실, 고창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 설치 가능한 시설 기준을 변경하여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기로 하는 고창군 계획 조례 개정안을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입법 예고한 사실, 이후 고창군은 2021. 7. 15. 고창군 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생산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고창군 조례에 의하여 생산관리지역에 야영장 시설 조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개정된 상태였고, 그 개정 취지에 따라 전북 지역의 각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점차적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 건축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어 가던 상황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목적 달성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창군 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생산관리지역 안에 야영장 시설 조성이 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정원 조성 및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토목설계 중도금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전 재해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중도금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신하여 2020. 9. 25. 정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고창군수에게 접수한 사실, 2020. 10. 15. 야영장 시설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고창군수에게 접수된 사실, 위 개발행위 허가 신청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와 재해영향평가서도 함께 고창군수에게 접수된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위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원고가 피고에게 토목설계 중도금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전 재해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중도금 1,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토목설계 잔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정원 조성에 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야영장 시설 조성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2,530만 원(= 990만 원 + 1,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마지막으로 접수된 2020. 10. 15.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0. 11.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재판장판사정재규

판사구나영

판사정유성

1) 이 사건 토지들 중 G 토지는 전체 부지의 진출입로로, H 토지는 정원 조성을 위한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이후 이 사건 토지들 중 E 토지, F 토지는 이 사건 용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하에서는 편의상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 대상이었던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칭하기로 한다.